

#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허훈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1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30일  
발 의 자: 허 · 훈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 
김원태, 김혜지, 박상혁,  
박영한, 서상열, 송경택,  
이희원, 장태용, 정지웅,  
채수지, 최민규, 최호정,  
황유정, 황철규 의원(17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민간위탁 재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위탁 시에도 매년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추진 절차를 재계약과 같은 절차를 적용토록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- 또한,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기준을 임의규정으로 바로잡고,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회계감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바로잡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이 선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위탁 개념을 재정의함(안 제2조제4호)
- 나.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 동의를 갈음하되, 시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 시에는 동의를 받도록 재위탁 절차를 개선함(안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)

- 다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강  
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함.(안 제5조제3항)
- 라. 민간위탁 회계감사 수행 대상자에 세무사를 포함한 조례 일부 개정  
조례안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하여 회계사만이 민간위탁 회계  
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.(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17조
- 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”를 “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“사업비 결산서 검사”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중요내용”이란 위탁유형 변경,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,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.

제4조의3제1항 중 “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재계약시”를 “재위탁 또는 재계약시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공무원, 시의회 의원,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.”를 “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당연직은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의회 의원
2.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

3. 그 밖에 운영위원회 심의의 전문성·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5조제7항 전단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”사업비 결산 검사인“이라 한다)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”를 “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”로 하고, 후단 “사업비 결산서 검사”를 “회계감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5조제8항 “독립된 사업비 결산 검사인”을 “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”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<u>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</u>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“<u>사업비 결산서 검사</u>”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등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<u>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</u>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</u> ----- -----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“<u>중요내용</u>”이란 위탁유형 변경,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,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.</p> <p>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에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



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사업비 결산 검사인”이라 한다)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절차 및 방법(사업비 정산기준 마련, 정산 매뉴얼 작성,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)은 규칙으로 정한다.

1. 「세무사법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

2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

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독립된 사업비 결산 검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⑨ (생략)

-----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-----

-----회계감사-----

<삭제>

<삭제>

⑧ -----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-----

⑨ (현행과 같음)